

춘천지방법원 2017. 8. 30 선고 2016나54180 판결 [점유회수 청구의 소]

재판경과

춘천지방법원 2017. 8. 30 선고 2016나54180 판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 11. 22 선고 2016가단33232 판결

전 문

원고,항소인 목운건설 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와이즈에프앤아이

변론 종결 2017. 6. 28

판결선 고 2017. 8. 30

제1심 판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 11. 22. 선고 2016가단33232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하라(원고는 제1심에서 주위적으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관하여 유치권에 기한 점유회수 청구를,예비적으로 소유권확인 및 소유권에 기한 인도 청구를 하였으나,이 법원에서 주위적 청구를 취하하였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因 제1심 판결문 제4면 10행부터 제5면 14행까지의 '3.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부분을 삭제한다.

因 제1심 판결문 제5면 15행의 '4.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을 *3. 부동산 인도 청구에 대한 판단'으로 고쳐쓴다.

因 제1심 판결문 제6면 6행부터 1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쓴다.

『2) 갑 제1호증,을 제8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민아건설은 건축주로서 2006. 12. 18. 로그인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건축공사계약을체결하고 민아건설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원고는 로그인의 하수급인으로 이사건 공사 중 일부를 담당한 사실,원고는 로그인과 이 사건 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공사대금의 잔금은 분양 후 정산하되,미분양시 준공 후 대물정산 처리하기로 약정한 사실을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민아건설과 로그인 사이에는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당시부터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도급인인 민아건설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고,원고 역시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이 원시적으로는도급인에게 귀속되는 것을 전제로 위와 같은 대물변제 약정을

체결한 것이라고 봄이상당하다.

한편, 원고는 민아건설과 로그인이, 민아건설이 로그인에게 기성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완성된 건물의 건축주 명의를 로그인으로 변경하고 부동산 및 현장을 로그인에게 인도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공사대금 미지급시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은 수급인에게 귀속되는 것이어서 원고가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저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민아건설과 로그인의 위와 같은 내용의 약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약정이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로그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오히려 민아건설이 여전히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함을 전제로, 만일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로그인에게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취지로 보일 뿐이다), 나아가 민아건설과 로그인 사이의 위 약정이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곧바로 귀속시키기로 하는 합의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성환판사 이민영판사 오에스더

별지